

일본 지식재산정책의 변화와 시사점

김승군 | 지식재산권연구센터 주임연구원

I. 서 론

일본은 왜 知的財産立國을 선언하였는가?

지식재산에 대한 드라이브 정책을 조사하다 보면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소위 「잃어버린 10년」을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식재산을 선택한 것이다. 일본의 장기경기침체를 분석한 논문들을 보면 그 원인으로서 자산가격 붕괴·부실채권과 생산성감소 등이라고 분석하고 있지¹⁾, 지식재산에 관한 정책 등이 잘못되어서 일본 경제가 장기불황의 늪에 빠져있다고 분석한 논문은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지식재산권을 통한 국가경쟁력회복을 내걸고 일본 고이즈미 총리가 직접 진두지휘를 하여 「지적재산전략대강」(2002. 7. 3), 「지적재산 전략본부」(2003. 2. 26), 「지적재산기본법」(2003. 3), 「지적재산의 창조, 보호, 활용에 관한 추진계획」(2003. 7. 8)을 마련하는 등 지식재산입국의 틀을 만들어 가고 있다.

본고에서는 catch-up으로 대변되는 일본의 발전모델과 지식재산입국을 선언하기까지의 배경

과 변화를 고찰함으로써 일본 지식재산정책의 방향성 즉 지식재산입국의 이면을 밝히고자 한다.

II. 일본의 경제발전모델에 대한 반성

전후의 일본은 catch-up 경제구조로 즉, 외국으로부터 기본기술을 도입하고 생산현장의 땀과 고안에 의한 개량을 중시, 고품질의 제품을 값싸게 생산, 수출하는 가공무역의 패턴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었다.

기업의 발전은 생산시스템으로의 재투자를 가능하게 하고, 고용을 안정화하고, 고용의 안정화는 노동자의 기술과 의식을 향상하고 점점 생산성이 높아지는 순환구조를 만들었다.

어떤 의미로 전후의 사회경제시스템 전체가 일본형 발전모델에 정확하게 들어맞았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특허제도 또한 예외는 아니어서 권리자의 입증 부담이 커다란 침해소송절차 등, 후발주자(second runner)에게 비교적 유리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²⁾

1) 이에 대해 자세한 것은 강삼모 등 8명, 일본경제의 장기침체와 한국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2.12, 40-45면 참조.

2) 1997년 4월 특허청 장관의 간담회인 「21세기의 지식재산권을 생각하는 간담회」의 제안에 기초하여 일본 특허청은 1998년, 1999년에 권리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등의 프로페이터트 지향의 법개정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catch-up형 경제발전모델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1980년대 1990년대 초반까지일 것이다.

IMD(경영개발국제연구소)의 경쟁력랭킹에서 1993년까지 제1위를 고수하던 일본은 그 순위가 떨어지더니 2002년에는 제30위까지 추락하였다. 그러나 일본국내적으로는 효율적, 기동적인 생산라인이 존재하다. 산업생산성이 쇠퇴한 것은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이 낮아진 것은 무엇 때문일까.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1개의 시나리오를 바로 제시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현재 일본의 현상황의 원인이 수요와 공급의 부조화는 것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은 거의 일치한다. 그 의견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즉 일본이 이제까지 시장으로서 장악한 곳에 제품의 생산성 및 품질을 높인 아시아 각국의 기업이 참여해오고 있기 때문에 공급이 넘치고 있다. 또한 공급이 수요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잠재수요를 발굴하지 못한 것도 문제이다.

둘째, 지금까지와 같이 선행기술을 도입하고 때로는 모방 또는 개량하는 것에 의해 값싸고 좋은 물건을 만들어 기존의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전략으로 모방하기 쉬운 물건은 모방되기도 쉽기 때문에 코스트경쟁력이 있는 개발도상국의 기업에게 추격당하는 것은 자명한 것이다. 과거에 일본에는 없고 미국에는 있는 선행기술이 적지 않았지만, 이제는 있더라도 미국기업이 기술이전하여 주지 않게 되었다.

이와같이 catch-up형 경제에 적합한 발전모델의 전제조건들이 이미 무너지고 있으며 새로운 발전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일본정부는 판단하였고, 그 대안이 지식재산의 창조·보호·활용을 강조한 지식재산입국이다.

III. 제도와 정책의 catch-up

1. 지식재산권 제도

일본의 지식재산권 제도의 역사는 1884년의 상표조례, 1885년의 전매특허 조례, 1899년의 저작권법의 제정을 그 시초라고 할 수 있고 한편, 미국은 1790년에 연방 특허법 및 연방 저작권법, 1870년에 연방 상표법이 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일본은 미국에 비해 특허법에 대해서는 95년, 상표법에 대해서는 14년, 저작권법에 대해서는 109년 늦었다.

그 후 일본은 새로운 기술분야의 출현, 보호해야 할 기술영역의 확대, 경제활동의 글로벌화 등의 지식재산권 제도를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제도 및 그 운용상의 개정을 하고 있었지만 그 것들은 항상 미국 등에 있어서의 제도·운용의 개정 동향을 지표로, 그것들을 배워서 개정하는식의 catch-up형태의 제도 정비였으며, 이것도 미국의 대일 요구에 따른 것이다.

예를 들면 ① 물질특허제도에 관해서는 미국은 1790년 최초의 연방특허법에 이미 채택하고 있던 것을 일본은 185년 후인 1975년의 특허법 개정에 의해 도입했다. ②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제도에 관해서는 미국은 1836년의 특허법 개정에 의해 도입한 것임에 대해 일본은 52년 후의 1888년의 특허조례에 의해 도입했다. ③ 서비스마크의 보호를 위한 등록제도에 관해서는 미국은 1946년 연방상표법에 의해 도입한 것에 비해 일본은 45년 후의 1991년의 상표법개정에 의해 도입했다. ④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의 개정에 관해서 미국은 1980년에 실시한 것임에 대해 일본은 5년 후인 1985년에 실시했다. ⑤ 반도체칩의 회로배치를 보호하는 반도체칩보호법에 관해서

미국은 1984년에 제정한 것에 대해 일본은 1년 후의 1985년에 제정했다. ⑥ 컴퓨터·소프트웨어를 기록한 매체의 특허에 의한 보호에 관해서는 미국은 1996년에 심사기준을 개정해 보호를 시작한 것에 대해, 일본은 1년 후인 97년에 심사기준을 개정하였다.

2. 국가의 전략

가. 과학기술정책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 대공항,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연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시장개입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었으며,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도 전반적인 정책관과 맥을 같이하여 왔다. 전후에 정부의 적극적 시장개입에 대한 요구는 약화되고 있었으나, 과학기술분야에 정부의 역할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 당위론이었다. 이러한 당위론을 문서화한 것이 바로 1945년 Vannevar Bush가 작성한 미국정부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보고서인 「과학, 영원한 프론티어(Science, the Endless Frontier)」이다.

비록 일부의 반대가 있었지만, 루즈벨트 대통령의 요구로 과학연구개발국(Office of Scientific Research and Development)의 책임자였던 부시가 작성한 이 보고서는 전후 미국 과학기술정책

의 기초가 되었다.³⁾

과학기술정책에 대해 일본은 1995년에 「과학기술기본법」을 제정하고 1996년에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제정하였다. 부시리포트에 비해 50년 늦은 것이다.

나. 지식재산정책

미국에서는 레이건대통령이 설립한 산업경쟁력위원회(위원장 : 휴렛팩커드 사장 존 영)의 보고서(영리포트)가 1985년에 공표되었다. 동보고서는 미국의 기술력이 일본이나 유럽에 비해 급속히 우위성을 상실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과학기술의 진흥에 기여하여 미국 지식재산의 국내외에 있어서의 보호강화를 권고하고 있다. 즉, 산업체권보호를 강화하지 않으면 미국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재생할 수 없다는 것이 영리포트의 주장이었다. 미국은 그 후 현재까지 특허권 강화정책을 여러 가지 경로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산업경쟁력의 향상에 성공하고 있다.⁴⁾

일본의 과학기술기본계획에 일부 지식재산권에 관한 항목이 포함되고 있지만⁵⁾ 국가차원의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차원에서 지식재산의 창조·보호·활용을 강조한 것은 2002년에 공표된 「지식재산전략대강」이 처음이며, 이는 상위레벨에서 결정된 정부의 지식재산에 관한 지침으로 하위레벨의 성청별 정책집행과정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사용되게 되었다.⁶⁾

3) 동보고서에서 부시는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시키는데는 연구개발비용의 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특허제도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대기업의 시장지배를 위해 특허권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 신기술창업자가 정부연구비로 개발한 기술은 개발자에게 특허권을 주고, 정부지원연구의 특허권은 실시권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 서정욱, 미국의 과학기술정책시기 주는 교훈, 과학기술부, 1999, 9-10면.

4) 최근 미국은 WTO를 통한 다자간 협상에 의한 지식재산강화보다는 FTA교섭을 통한 쌍무협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5) 일본의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01년3월30일)에서는 과학기술기본정책을 위해 「연구성과의 취급에 대해서는 논문의 발표에만 머물지 않고, 지식재산권의 획득·활용을 염두에 두도록 연구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6) 지식재산전략대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이성정·하홍준·김승군, 지식재산 인프라(infra) 구축방안,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권연구센터, 2002. 12. 참조.

대강의 일정에 따라 2003년 3월 1일부터 지식재산기본법과 구체적 실천계획인 「지식재산의 창조·보호·활용에 관한 추진계획(이하, 지식재산 추진계획)」이 지식재산전략본부⁷⁾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며, 동 본부에서 추진하는 지식재산추진계획에 관련되는 예산은 2003년도 기준으로 8,287 억엔에 이르고 있다.

지식재산추진계획은 일본의 지식재산에 관한 모든 정책을 망라하여 창조·보호·활용·인력 부분으로 나누어 각 정책을 추진해야하는 주체를 추진시한과 함께 제시하고 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자원의 배분시에 지식재산을 적극 활용하고 사후평가에도 적극 반영한다.

둘째, 지식재산취득을 전제로 한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연구개발에 있어 특허정보를 활용한다.

셋째, 지식재산고등법원 등의 창설을 통해 분쟁처리기능을 강화하고, 외국의 모방품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

넷째, 기업에서 지식재산을 경영 자원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섯째, 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을 다수 육성하고 국민의 지식재산 의식을 함양한다.

일본은 자의반 타의반 지식재산권 제도정비에 나서면서 외국제도

를 catch-up해 왔다. 그러나 제도만 catch-up해 왔지, 그 제도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제도의 철학, 운영의 노하우 등은 catch-up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미국의 기업들에게 혹독한 댓가를 치루면서⁸⁾ 지식재산권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인식과 자세가 바뀌게 된 것으로 보이며⁹⁾ 그 결과가 지식재산입국으로 나타나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IV. 결 론

1980년 미국 대법원의 차크라바티 판결¹⁰⁾과 1985년 영리포트가 미국의 대내외 지식재산정책에 많은 영향을 준 것과 마찬가지로 2002년의 지식재산전략대강은 일본의 대내외 지식재산정책에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표 1).

(표 1) 일본 지식재산정책의 변화

| 년도 | 國是 | 근거법 | 관련 | 추진·조정 | IP의 | IP에 대한 | 발명의 무게 |
|-------|--------------|-------------|------------------------------|------------------------------|------------------|---------------------------|---------------------|
| 1995년 | 과학기술 창조입국 | 과학기술 기본법 | 종합정책 기본계획 | 기관 종합과학 기술회의 | 무게중심 특허 보호 | 정부의 시각 과학기술의 보호수단 | 중심 개량발명 (기업체) |
| 2002년 | 지식재산 입국 | 지식재산 기본법 | 지식재산 전략대강 지식재산 추진계획 | 지식재산 전략회의 지식재산 추진본부 | 특허 활용 | 기술혁신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수단 | 원천특허 (대학) |

7) 본부장은 일본 고이즈미 총리.

8) Coming Glass Works v. Sumitomo Electric U.S.A., Inc., 868 F.2d 1251, 1989 U.S. App. LEXIS 1924 ; Honeywell, Inc. v. Minolta Camera Co., 1990 U.S. Dist. LEXIS 5954.

9) 일본기업의 변화에 대해서는 김승균, 일본의 지식재산정책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지식재산권연구센터 지식재산포럼 발표자료(2004.4.23).

10) 태양 아래서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것은 특허의 대상(Anything under the sun made by man are Anything under the sun made by man are patentable),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일본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활력있는 경제사회를 실현하도록 지식재산 제도의 국제조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이와 방향성을 같이 하면서 국부의 중대에 이바지하는 제도라면 종래의 기성개념에 구애될 필요없이 대담하고 유연하게 지식재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¹¹⁾

상기 내용을 정리하면 ‘국부의 중대에 이바지하도록 지식재산시스템을 구축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으로 미국 영리포트의 결론과 동일하다.

미국이 영리포트 이후 강한 대외 지식재산정책을 구사하였듯이 일본도 모방품 대책 등에서 강한 대외 지식재산정책을 구사하게 될 것이다. 그 대상은 일본보다 기술이 앞서는 미국을 위시한 기술 선진국이 아니라 그들보다 뒤떨어진 우리나라, 대만 등이 그 목표이며, 이미 PDP 분쟁¹²⁾ 등으로 현 실화되었다.

일본은 1980년대 미국에게 당했던 전례를 그대로 우리나라 등에게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우리의 대책은 과연 무엇인가.

발행 2004/12

11) 知的財産戦略本部, 知的財産の創造、保護及び活用に關する推進計劃, 2003.7.8, 6頁.

12) 후지쯔, LG전자 및 삼성SDI로 알비자급 공문 발송(2003년 말)

삼성SDI, 미국법원에 특허무효소송(2004. 3. 4)

후지쯔, 삼성SDI 미국과 일본법원에 제소, 토쿄세관에 수입금지요청(2004. 4. 7)

토쿄세관, 수입금지신청 전격승인(2004. 4. 21)



관악기

관악기란 입으로 불어서 관 안의 공기를 진동 시켜 소리를 내는 악기를 일컫는다. 풀루트, 호른, 트럼펫, 클라리넷, 색스폰 등이 모두 포함된다. 광악기의 기원은 역사가 시작되기 이전인 듯, 선사시대 유물 중 동물의 뼈에 구멍을 뚫은 원시적 형태의 풀루트가 바로 그것이다. 기원전 3천 년 경의 것으로 추정되는 이집트와, 유프라데스 강 지역의 풀루트가 발견되었고, 이것들이 현재로 발전된 것이다.

프랑스의 장 밥티스 휠리는 1681년 최초의 풀루트 곡을 작곡하고, 독일의 테오발트 보음이 19세기에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풀루트를 완성하였다. 호른은 원래 동물의 뿔로 만들었고, 호른에서 변형된 프럼펫은 기원전 2천년에 이집트에서 발견되었다. 오보에는 19세기 프랑스의 르레데릭 트리바르가, 클라리넷은 1670년 독일의 요한 크리스토퍼 덴너가, 색스폰은 벨기에의 아돌프가 발명했다.